

<p>로서 해당공사 또는 공단의설치조례에 서울특별시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체비지를 무상으로 대부→삭제</p> <p>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:양재대)</p> <p>○본 개정조례안은 “지방공사에 대한 체비지 무상대부 허용” 규정이 지방재정법시행령 규정에 위배되므로 이를 삭제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요구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</p> <p>○체비지에 대하여</p> <p>-당초 건설교통부에서는 “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이 아니므로 지방재정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,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거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, 수익, 대부 등 사업시행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”으로 유권해석을 하여 지방공사에 대한 체비지의 무상대부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했으나(1차회신)</p> <p>-재결의시 체비지는 공유재산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,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을 배제하고 지방재정법령에 따라 관리하는 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취지에 맞지 않으나 현행 토지구획정리사업법(제66조)에서 체비지 “관리”의 지방재정법 배제 명문규정이 없어 지방재정법의 배제가 어려우므로 지방재정법 규정도 따라야 한다고 해석했고(2차회신)</p> <p>-행정자치부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체비지가 공유재산이므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사는 무상대부 허용기관이 아니므로 동조제2조의2 규정의 지방재정법시행령 규정에 위배되므로 삭제할 것을 요구했으나</p> <p>○양기관 간의 견해차이에 따라 일시 법령해석에 혼란을 초래한 게 사실이긴 하나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조례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제정토록 한 취지에서 보면 자치입법권의 제정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조항의 개정은 차치하고 법적안정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관련 조항의 삭제는 불가피하다고 사료됨.</p> <p>4. 질의 및 답변요지</p>	<p>○생략</p> <p>5. 토론요지</p> <p>○생략</p> <p>6. 소위원회 심사내용</p> <p>○소위원회 구성 없음.</p> <p>7. 심사결과</p> <p>○원안가결(만장일치)</p> <p>8. 기타 필요한 사항</p> <p>○없음.</p> <hr/> <p>서울특별시체비지대부료등부과·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체비지대부료등부과·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2조의2를 삭제한다.</p> <p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hr/> <p>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안에 대한수정안</p> <p>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</p> <p>안 제7조제2항 중 “20인”을 “22인”으로 하고, 동조제3항제2호 중 “의원”을 “의원 3인”으로 하며, 동조동항제3호 “종사자”를 “종사자 각 1인”으로 한다.</p> <p>부칙 제1조 중 “1999년 1월 1일”을 “공포한 날”로 한다.</p> <p>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안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·장애인·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해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, 그 관리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“노인”이라 함은 60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. 2. “장애인”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. 3. “청소년”이라 함은 2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.
---	---

<p>다.</p> <p>제 3 조(기금의 설치)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노인·장애인·청소년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·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</p> <p>제 4 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서울특별시의 출연금 2.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3. 기타 수입금 <p>제 5 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노인·장애인·청소년의 사회참여 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2. 노인·장애인·청소년단체 지도·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 3. 노인·장애인·청소년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·연구 4. 노인·장애인·청소년 관련 학술대회 등 행사 지원 5. 노인·장애인·청소년 관련단체 및 시설 종사자 교육 6. 저소득 노인·장애인·청소년 자활지원 7. 기타 시장이 노인·장애인·청소년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. 기타 기금의 관리·운용에 필요한 경비 <p>제 6 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계정·장애인복지계정·청소년복지계정으로 구분하고,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·운용하여야 한다.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금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부족자금에 대하여 각 계정간에 차입하여 운용할 수 있다.</p> <p>③기금은 계정별로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,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한다.</p> <p>제 7 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기금의 조성·관리 및 운용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③위원장은 서울특별시 행정(1)부시장이 되</p>	<p>고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보건복지국장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서울특별시 행정관리국장, 시정기획관 2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3인 및 노인·장애인·청소년복지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. 노인·장애인·청소년 관련 단체·법인 등의 종사자 각 1인 <p>④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</p> <p>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서울특별시 노인복지과장이 된다.</p> <p>제 8 조(분과위원회) 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있는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에 노인복지·장애인복지·청소년복지 분과위원회를 둔다.</p> <p>②분과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</p> <p>제 9 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기금운용계획안 2. 기금의 조성·적립·운용 및 결산 3. 기타 기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<p>제 10 조(회의) ①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,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</p> <p>②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.</p> <p>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④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</p> <p>제 11 조(수당 등)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제 12 조(기금관리공무원 등) ①시장은 기금운용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</p>
--	--

<p>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기금운영관: 보건복지국장 2. 분입기금운영관: 노인복지과장, 장애인복지과장, 청소년과장 3. 기금출납원: 분입기금운영관이 지정하는 사무관 <p>②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영관에게,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.</p> <p>제13조(기금운영계획 등) ①시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</p> <p>②시장은 제1항의 기금운영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제 1 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 2 조(다른 조례의 폐지) 서울특별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,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, 서울특별시청소년자립지원기금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.</p> <p>제 3 조(노인복지기금등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) ①이 조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각 조례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노인복지기금·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기금 및 서울특별시청소년자립지원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·채무 기타의 권리·의무는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이 이를 승계한다.</p> <p>②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서울특별시노인복지기금·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기금 및 서울특별시청소년자립지원기금의 설치운용조례에 의한 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</p> <hr/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관광진흥위원회조례안 심사보고서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98년 12월 문교보사위원회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심사경과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1998년 12월 8일, 서울특별시장 나. 회부일자: 1998년 12월 10일 다. 상정 및 의결일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제1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제7차 문교보사위원회('98.12.23) 상정: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원안가결 2. 제안설명요지(문화관광국장 김우석) <p>우리 시 관광관련 사업을 지원·육성하고, 관광객 유치활동 등 관광진흥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관광진흥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려는 것임.</p> 3. 주요골자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위원회의 기능: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장자문(안 제2조)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1) 시의 관광진흥을 위한 장·단기 시책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 (2)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(3) 관광자원개발 및 관광객 맞이 준비에 관한 사항 (4) 관광진흥을 위한 민간업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나. 위원회의 구성: 위촉위원을 위원의 과반으로 구성(안 제3조)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1) 위원: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 포함 20인 이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위원장 및 부위원장: 위원 중에서 호선 ○위 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관계공무원 -기타 관광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(2) 간사: 문화관광국 관광과장 다. 위원의 임기: 2년 연임가능(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) 4. 참고사항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관련법령: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(자문기관의 설치) 나. 예산조치: '99년도 예산에 반영 예정(400만원) 다. 합 의: 필요 없음. 5. 검토보고(전문위원 윤병국)
--	--